

사 규 번 호	
관 리 부 서	
등 급	일 반

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(안)

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

2025.11.12 제정

2026.03.26 개정

제 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39조의2,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삼양식품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리스크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회사 경영전반에 발생가능한 제반위험에 관한 사항을 검토, 결의, 보고한다.
- ② 위원회는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.
 - (1)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
 - (2) 내부거래 직권조사 명령권
 - (3) 내부거래 시정조치 건의권
- ③ 간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,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 및 그 활동을 관리한다.

제 4 조(의무)

- ①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(1) 선관주의 의무: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.
 - (2) 비밀유지 의무: 위원회의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 - (3) 이사회 보고 의무: 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

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5 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, 이사회는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전까지 충원을 해야 한다.
- ⑤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는 본 규정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,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제 6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7 조(리스크 식별 및 회의 소집)

- ① 리스크 식별 관련, 간사는 해당 리스크에 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장에게 문서 또는 구도로 보고하면, 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위원회 소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조 3항을 준용한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구두, 전자우편, 문서 등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(결의사항 및 검토사항)

위원회에서 결의사항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재무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직전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① 검토사항
 - (1) 자기자본 2.5%이상의 타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
 - (2) 자기자본 2.5%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 - (3) 자산총액 2.5%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
 - (4) 자산총액 5%이상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
 - (5) 자기자본 5%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, 공장의 신설
 - (6)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결의사항
 - (1)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
 - 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관한 사항
 - 2)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사항
 - 3)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- (2)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
 - 1) 합병, 분할, 유상증자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구조 변화에 관한 사항
 - 2) 매출총계 및 부채총계 5% 이상 영업양수도
 - 3)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(3) 기타사항
 - 1)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
 - 2)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(외부 자문 등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 체결, 변경 및 해지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.

제 12 조(이사회와의 관계, 통지의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결의 검토 등 주요한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결의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.

제 13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타

제 14 조(간사)

- 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재무, 전략, 인사 등 회사 전반의 경영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부서장급 이상의 인원으로 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2. (개정)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